

##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지침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국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원, 직원 및 기타 산학협력 활동에 종사하는 자(이하 “교직원등”이라 한다)가 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,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산업자문”이라 함은 본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등이 산업체,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(이하 “산업체등”이라 한다)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도(기술지도, 경영지도, 디자인지도 등)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.
2. "기술지도"는 산업체등에 기술의 개량·개발 등을 위한 기술지도 및 노하우 제공 등을 말한다.
3. “경영지도”는 산업체등에 업무 효율화와 경영활동 등에 대한 의견 및 노하우 제공 등을 말한다.
4. “디자인지도”는 산업체등에 디자인의 개선·개발 등을 위한 의견 및 노하우 제공 등을 말한다.
5. “컨설팅”은 기술지도, 경영지도, 디자인지도 이외 산업체등에 제공하는 전문적 의견 및 노하우 제공 등을 말한다.
6. "산업자문료"라 함은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.

**제3조(산업자문 방법 등)** ①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산업체등 또는 본교 교직원등은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산업자문은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, 본교 교직원등은 산업자문결과를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단, 자문내용 중 산업체등의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기입하지 않을 수 있다.

**제4조(산업자문료 납부)** ①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산업자문료는 산업자문 분야에서 적용되는 적정수준에서 산업체등과 본교 교직원등이 협의하여 산업자문 신청시에 결정한다.

**제5조(산업자문료 분배 및 지급)** ① 산업자문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배한다.

1. 부가가치세액 공제 후 금액에 대해 1천만원까지는 산업자문에 참가한 본교 교직원등이 92.5%를, 산학협력단에 7.5%를 분배한다. <개정 2022.08.01.>
  2. 부가가치세액 공제 후 금액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산업자문에 참가한 본교 교직원등이 85%를, 산학협력단에 15%를 분배한다. <개정 2022.08.01.>
- ② 납부된 산업자문료는 산업자문결과 보고서 제출 후 전항에 의거하여 분배 지급한다.

**제6조(실적평가반영)** 산업자문 실적은 본교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며,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7조(기타사항)** ①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.

- ② 산업자문 신청서와 산업자문 계약서 및 산업자문 결과보고서는 별표 서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산업체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1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

<별표 3>

산업자문 결과보고서			
지원분야 (해당분야 선택)	기술지도 / 경영지원 / 디자인지도 / 컨설팅		
신청기관(업체)명			
자문일시(기간)	20 . . . ~ 20 . . . (총 시간)	산업자문료 (단위: 원)	
산업자문 주제			
자문 내용 및 결과			
위의 산업자문 결과에 대한 사실을 확인합니다.			
기관(업체)명 :	대표자 :	(인)	

hp 2017년05월31일  
법인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, 계약서와 동일한 인감으로  
날인하여야 함.  
(단, 법인이 아닐 경우 대표자 개인 인감 날인 가능)

위와 같이 신청기관(업체)에게 산업자문을 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20 . . . .

소속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직위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성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

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